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2012. 06. 25  
도시관리위원회

## 1. 경 과

- 청 원 자 : 강북구 번3동 주공아파트 112-100호 구분승외 358명
- 소개의원 : 신승호 (도시관리위원회)
- 접수일자 : 2012. 6. 11 (23번)
- 회부일자 : 2012. 6. 12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12.6.25 상정·채택)

## 2. 청원요지

-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2010. 4. 22 제정·시행)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임.
- 서울시는 지원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 적이 없으며, 다만 2010.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개정 표준안 추진」 방침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와 공동주택과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일부 자치구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달라 조례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

음. 따라서 서울시가 지원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함.

### 3.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신승호 의원)

- 서울시는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는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추진」 방침을 통해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와 공동주택과의 분담비율을 60:40으로 정하여, 자치구 예산으로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본 청원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소개함.

###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정래)

- 본 청원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

로, 2012. 6. 11일 신승호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2012. 6.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비율을 자치구 60% 입주민 부담 40% 범위내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2010. 4. 22 시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가 시행된 후 아직까지 지원한 바 없어 2013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임.
- 영구임대주택<sup>1)</sup>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의 85%를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23~43제곱미터의 소형으로, 서울시에는 강남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등 7개 구에 분포되어 있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 25개 자치구 중 18개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영구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의 공동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강남구, 노원구, 동작구는 공동전기료 전액을, 강북구는 60%를, 강서구는 보안등 전기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그리고 마포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음.

1) 2011년도 말 현재 서울시내 임대주택은 132,794호이며, 이 중 영구임대주택은 총 45,998호(SH공사 22,370호, LH공사 23,628호)이며,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은 평균 185만원(141~230만원), 월임대료는 4만5천원(35~55천원) 수준임.

- 참고로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 자치구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금은 총 12억 9,600만원이며, 이 중 공동전기료 지원금액은 총 11억 5,700만원임.

<영구임대주택 소재 자치구별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분담비율>

자치구	지원근거	분담비율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강남구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100%(자치구)	100%(자치구)
강북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60%:40% (자치구:공동주택)	60%:40% (자치구:공동주택)
금천구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예산범위내	-
노원구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등단지내보안등 전기요금지원조례	100%(자치구)	-
동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제1항제2호)	100%(자치구)	-
강서구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보안등 전기료50% 지원	
마포구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규정 없음	

-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제정 이후 지원한 적이 없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난방비)를 가구당 연 18만원씩을 지원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법정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은 임대료 인상을 유예하는 등 타 임대주택 입주자에 비해 지원이 많으며,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지원은 곤란하며,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등의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배치되지 않으며,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7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비율이 50%부터 100%까지 차등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받는 입주민의 상대적 부담도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제3조의 서울시 예산 지원 규정 입법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종합하면, 당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입법취지에 따라 입주민 공동부담분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자치구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금 내역(LH포함, 2012.5.31 기준)

(단위 : 천원)

자치구	단지명	세대수	지원 금액 합계	2010년			2011년			2012.05월		
				소계	공통전기	공중수도	소계	공통전기	공중수도	소계	공통전기	공중수도
강남구	대계단지(S공사)	1,623	199,418	33,850	27,326	6,524	107,563	71,289	36,274	58,005	36,303	21,702
	수저중공(S공사)	2,555	162,672	30,893	29,843	1,050	90,025	76,352	13,673	41,754	40,017	1,737
	수저단지(S공사)	1,508	195,517	34,941	22,998	11,943	104,084	65,992	38,092	56,492	39,240	17,252
	수계단지(S공사)	984	136,899	28,519	21,610	6,909	73,870	52,058	21,812	34,510	26,736	7,774
강북구	반동중공2단지	1,766	113,969	15,496	15,496	0	46,218	46,165	53	52,255	52,156	99
	반동중공3단지	1,292	113,287	20,062	20,062	0	42,150	42,060	90	51,075	50,877	180
	반동중공5단지	1,123	139,156	22,114	22,114	0	55,624	55,424	200	61,418	60,884	534
금천구	주공3단지아파트	1,226	83,663	42,000	42,000	0	24,218	24,218		17,475	17,475	0
노원구	월계중공단지	2,298	2,559	1,016	1,016	0	1,115	1,115	0	428	428	0
	월계침단지	1,372	3,001	1,269	1,269	0	1,263	1,263	0	469	469	0
	공릉단지	1,365	2,565	1,115	1,115	0	1,042	1,042	0	408	408	0
	중계야영단지	2,619	6,257	2,870	2,870	0	2,668	2,668	0	719	719	0
	중계중공단지	882	4,925	1,980	1,980	0	2,123	2,123	0	822	822	0
	중계중공3단지	1,325	1,866	812	812	0	781	781	0	303	303	0
	하계야영단지	640	2,776	918	918	0	1,286	1,286	0	572	572	0
	하계중공단지	2,634	4,485	1,666	1,666	0	2,038	2,038	0	781	781	0
	상계뜰	170	1,152	431	431	0	522	522	0	199	199	0
동작구	대방중공단지	925	117,391	23,530	23,530	0	45,145	45,145		48,716	48,716	0
합계		26,347	1,291,618	263,482	237,056	26,426	601,735	491,541	110,194	426,401	377,105	49,278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의견서 : 별첨

# 의 건 서

## □ 청 원 명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

## □ 채택의견

- 본 청원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공동전기요금의 서울시 지원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7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비율이 현재 50%부터 100%까지 차등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민의 상대적 부담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 제3조의 서울시 예산 지원 규정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 부담분 전액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음.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23	접수년월일	2012. 6. 11.
청 원 인	구본승 외 358명 (서울시 강북구 번3동 주공(아)112-1009호)		
소개의원	신승호 의원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3선거구)		
건 명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도시관리위원회		

## 《요 지》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의 규정에 서울시내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이후 예산 편성(2011,2012년)은 없었음.
- 동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